

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연번	산업안전보건법	주요 내용	벌칙
1	제10조(보고의무)	○ 산업재해 발생 보고 ※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-사망시: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-부상·질병시: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제출 또는 의정부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2	제11조(법령요지게시)	○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(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)	500만원 이하 과태료,
3	제12조(안전표지의 부착 등)	○ 안전, 보건표지를 부착 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-출입금지, 보행금지, 탑승금지, 금연, 인화성물질·폭발성물질·고온·낙하물·저온 등 경고표지, 보안경 착용·방독마스크·방진마스크·보안경 착용 등 지시표지 등	500만원 이하 과태료
4	제15조(안전관리자) 제16조(보건관리자)	○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: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선임	500만원 과태료
5	제23조(안전상의조치)	○위험기계·기구·설비 위험 방지: 프레스·리프트·크레인·동근톱 등 방호조치 ○전기·열·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: 접지, 누전차단기 설치 등 ○추락·붕괴·낙하·비래 등 위험 방지: 안전난간 설치, 안전모·안전벨트 착용 등 ○굴착, 하역, 벌목, 조작, 운반, 해체,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: 작업 계획서 작성(중량물 취급, 트럭·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) 등	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(안전모 등: 과태료)
6	제24조(보건상의조치)	○분진, 밀폐공간작업, 사무실오염, 소음 및 진동, 이상기압, 온·습도, 방사선, 근골격계부담작업,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 -방독마스크·방진마스크·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, 국소배기장치 설치, 휴게시설,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	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
7	제31조(안전·보건 교육)	※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※ 교육일지 작성(참석자 명단·날인 포함) ○ 정기교육 실시: 비사무직(월 2시간), 사무직(월 1시간), 관리감독자(연간16시간) ○ 채용시 교육 실시: 건설일용직(1시간이상, 일부는 4시간), 건설업외(8시간이상) ○ 특별교육 실시: 건설업(2시간이상), 건설업이외(16시간이상)	500만원 이하 과태료
8	제33조(유해·위험 기계, 기구등의 방호조치 등)	○유해·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-프레스·전단기·가스집합용접장치·크레인·승강기·리프트·용접기·압력용기·보일러·롤러기·연삭기·목재 가공용 동근톱·동력식 수동 대패·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	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
9	제34조(안전인증)	○유해·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-프레스·전단기·크레인·리프트·압력용기·롤러기·고소작업대 등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·판매하여야 함	3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
10	제36조(안전검사)	○유해·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-프레스·전단기·크레인(2톤이상)·리프트·압력용기·곤돌라·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·원심기(산업용)·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·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·롤러기·사출성형기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11	제38조(제조등의허가)	○유해 화학물질 제조·사용시 의정부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-디클로로벤지딘·알파나프틸아민·크롬산아연·베릴륨·비소 등 허가대상물질	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
12	제38조의2(석면조사) 제38조의4(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·제거)	○ 건축물 등 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 해야 함 ○석면 해체·제거시 석면해체·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○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·설비 철거시 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해 철거·해체 하여야 함	5,000만원 이하 과태료
13	제41조(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, 비치 등)	○ 화학물질 등 사용시 , 저장·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를 게시 ○화학물질의 용기·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	500만원 이하 과태료
14	제42조(작업환경측정)	○ 소음, 화학물질, 분진,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-6개월에 1회 이상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15	제43조(건강진단)	○ 일반건강진단 -사무직은 2년에 1회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○ 특수건강진단 -소음, 분진, 화학물질, 고열 등 노출 근로자(인자별로 6개월~2년 1회)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16	제64조(서류의보존)	○산업재해 발생기록, 관리책임자·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, 석면조사 서류, 작업환경측정·건강진단 서류 등: 3년간 보관	300만원 이하 과태료